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업장·지역가입자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포함 〉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9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업장·지역가입자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포함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9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2. 17.

(3) 회 부 일 : 2025. 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즉,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반면, 기업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상 상황임.

특히나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이 10년 가입으로 단축되면서 불과

10년의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퇴직하여 민간분야에 취업 시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음. 물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퇴직시점이라 연계 시 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현행	개정안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③ (생략)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 다. (생략) 라. <u>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u> <u><신설></u> 2. <u>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3. ~ 5.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수급권자</u> 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가입자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음.¹⁾

□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각각 공무원등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등과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1)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속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나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도 되지 아니함.²⁾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명목소득대체율을 종전의 70%에서 60%로 10%p 일시 인하하고,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종전의 60세에서 매 5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3년부터 65세가 되도록 하는 등 국

2)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2016. 5. 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연금제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제1차 국민연금개혁('98)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정부가 제출(1998. 5. 8.)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070호)에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공적연금제도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취지로 보았고,³⁾ 이는 위원회 대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1998년 12월 31일 공포 후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한편, 2009년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이하 “지역연금”이라 한다) 간에 가입이력 합산을 허용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연금연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9조제2호 단서가 함께 신설되었음.⁴⁾

- 참고로, 「연금연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둘 이상의 공적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적용되는 의무사

3)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 제151070호)」(1998. 5.), 31면.

4)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지역연金の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은 아니고, 희망자에 한한 선택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으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당연히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여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도록 설계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전 국민 의무가입’ 등 일반적·보편적 사회보험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게 하면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할 당시 고려된 ‘공적연금 중복수혜 방지’의 취지가 공무원등이 ‘평생직업’이라는 전통적 인식에 기초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민간 간 이직 형태가 다변화·유연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또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아진 이직 등으로 각 공적연금별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가입이력 합산을 허용함으로써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연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라 점차 상향되는 반면,⁵⁾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서로 다른 구조인바,⁶⁾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재취업하면서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한 경우의 연계급여 수급개시연령이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늦추어지는 불이익한 상황⁷⁾이 나타날 수 있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공무원등으로서 퇴직 후 민간부문에 재취업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개정안은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여부만으로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을 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5)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 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62세로,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로,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 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6)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7)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진 1969년에 출생한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2025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재취업하면서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62세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로, 공무원등이 아닌 민간부문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 후 공무원등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공적연금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역연금의 적용을 받게 됨.

□ 다만,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 편입되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여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아니할 수 있는 점,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각 직역연금에 따라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되어 공적연금의 적용이 배제되는 적용제외자나 무연금자 등 ‘사각지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그간 임의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온 경우라면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편입으로 연금보험료 부담이 반액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임의가입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새로 지게 되어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아니할 수도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공적연금의 이중 혜택 방지를 목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에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배제하였으나, 2009년 「연금연계법」 시행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연계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공적연금 연계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이 강제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10